

2025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 공고(3차)

우리군 청년창업가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장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2025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6. 19.

홍 천 군 수

I 사업 개요

- 모집인원 : 19~47세의 (예비)청년창업자 4명 이내
- 모집분야
 - (6차 산업분야) 지역농특산물과 연계된 가공 및 서비스업
 - (제조·기술창업) 신재생에너지, 환경, 식품, 정보통신, 전기·전자, 재료, 기계, 화공, 섬유, 생명, 공예 등
 - (지식창업) 디자인, 문화서비스업, 아이디어창업, 웹디자인, 번역, 마케팅홍보, 지식콘텐츠, 통신업, 전문컨설팅 등
 - (일반창업)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 창업

지원 제외 업종

- 프랜차이즈
- 대리점 등 거래를 대리하거나 매개하는 일을 하는 업종
- 주류판매 식음료업, 숙박업, 금융·부동산업, 음식점업*
- * 단,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점 가능(홍천 찰옥수수, 늘푸름 홍천 한우, 홍천 인삼, 홍천 잣, 홍천 쌀, 단호박, 사과, 오미자 등 원산지가 홍천군인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메뉴 포함 전체의 50% 이상 구성)
- 유흥·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 그 외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제외업종 : [붙임 1] 참고

○ 지원(사업)기간

- 시설개선비: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5. 12. 31.
- 임대료지원: 최초지급일 ~ 24회

○ 지원내용: 1인(팀)당 1,900만원 이내

- 시설개선비(700만원/1회 한도), 임대료(50만원/월 한도, 24회)
- (후속지원사업) 홍천군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청년창업가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등

II 신청방법

○ 공고기간: 2025. 6. 19.(목) ~ 7. 9.(수) (21일간)

○ 신청기간: 2025. 6. 25.(수) 09:00 ~ 7. 9.(수) 18:00 (15일간)

※ 접수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연장 될 수 있으며, 지원 건수 미달시 접수기간 연장공고 할 수 있음

○ 접수방법: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접수

※ 보탬e사이트 <https://www.losims.go.kr>

- 「붙임」 보탬e 강의교재(민간_비예치형) 참고 후 신청서 등록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마감일 18:00 시스템 접수 마감

○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4. 사업 참가 서약서
5.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기준 각 1부)
7.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8.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1부
9. 신용정보조회서 1부
10. 우대사항(가점부여) 증빙 서류 ※ 해당 시, 증빙서류 제출
11. 사업자등록증명 1부(기 창업자에 한함)

※ 구비서류 누락 또는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 문의처: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033-430-2896)

Ⅲ

자격 요건

-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7세 이하인 자
 -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홍천군 주소 이전 가능자
 - 주민등록상 지원 가능 연령: 1977. 6. 20. ~ 2006. 6. 19.
 - ※ 사업기간 중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공고일 기준**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2022. 6. 19.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법인은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은 개업연월일
 - ※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기 창업자는 신청하는 창업 외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제외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자
-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 중인 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취업(고용보험가입자 등) 중인 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타인명의로 사업신청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최근 5년 이내 정부, 홍천군 등에서 창업자금(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임대료 지원 사업 등)을 지원받은 자
- 1개의 사업장 소재지에 2개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 운영을 하려는 자
- 가족 간(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대료 일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는 자
-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시행한 사업비, 임대료 등은 지원 불가
- 시설개선사업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IV

지원 세부내용

○ (시설개선비 등) 700만원 한도/1회 (보조 70%, 자부담 30%)

※ 총 사업비의 70% 지원하되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지원 불가 항목

- 소모성 물품, 소프트웨어, 물품 수리,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 없는 물품 지원 불가
- 창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 및 시스템 구축비
 - ※ 창업 업종과 직접 관련이 있어도 청소기, 컴퓨터,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일반가전 등은 지원 불가
- 재료비, 홍보비, 외주용역비 등 민간자본보조 성격에 맞지 않는 항목
- 건설기계, 차량 등
- 단일품목 50만원 이하 기자재

○ (임대료) 50만원 한도/월 (최초지급일 ~ 24회 지급)

※ 선정 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년차 임대료 지원여부 결정

-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성명, 임차인(신청인)성명, 월세금액이 일치해야 보조금 지원
- 최초 임대차계약 내용과 달라질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필수
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처리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인정

지원 불가 항목

-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성명, 임차인(신청인)성명, 월세금액이 일치해야 임대료 지원
- 사업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 (교육) 홍천군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업기본(세무, 노무, 경영,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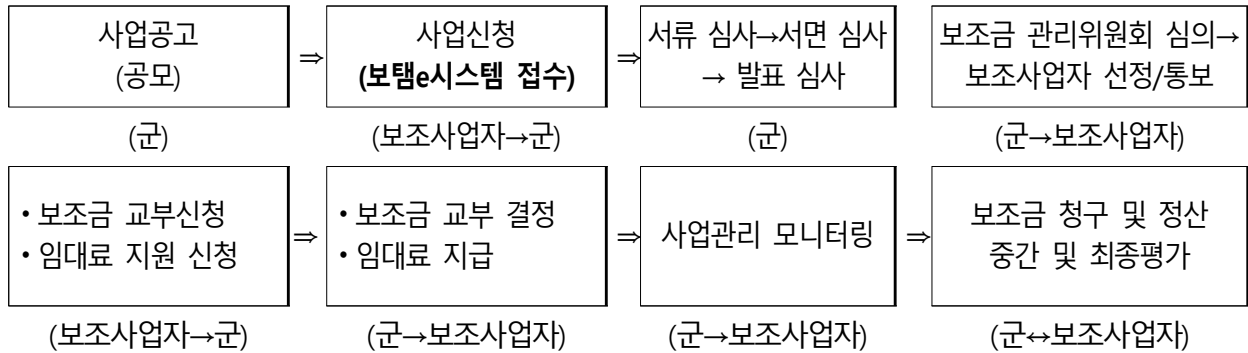
○ (네트워크) 청년창업가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 (후속지원) 3년차에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후속 지원 사업 지원 가능(최종 선정 시, 500만원 추가 지원)

- 포장재 개발 및 디자인 제작,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홍보비 지원 등

V

추진일정



※ 운영실태 점검: 연 2회(상·하반기), 중간 및 최종평가 진행, 추진 절차(선정방법 등)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VII

선정방법

- 서류심사: 연령, 주소지 등 자격, 지원 제외 대상 여부, 중복 참여 등
- 1차 심사: 심사위원 서면 심사
 - 심사방법: 심사표에 따라 채점, 고득점 순으로 8명 선정
 - ※ 10명 이내 접수 시 1차 심사 없이 2차 심사 진행
- 2차 심사: 심사위원회 심의(PT발표)
 - 심사방법: 신청자 발표(5분 내외) → 질의응답(10분 내외)
 - 심의내용 ☞ [붙임2] 심사기준표 참조
 - 선정결과: 개별문자통보(군·센터 홈페이지 평가 결과 점수 공개)
 - ※ 2차 심사 발표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 선정자는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홍천군청 타 부서의 유사 지원 사업 중복참여가 불가함

VIII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관련 법령 및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 시행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선정 확정 후 관내에 연내 창업을 완료해야 하며, 3년 동안 영업 유지 필수
- 지원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 이전, 홍천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한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전액환수
 - ※ 지원 기간: 임대료 최초지급일~24회 지급완료일, 사업장: 교부결정 당시 소재지
- 지원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휴·폐업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홍천군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급된 총 지원금(시설개선비 및 임대료)의 10% 환수
- 선정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교육 20시간 이상(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 10시간 이상)이수하여야 하며,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교육 10시간(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 5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홍천군과 홍천군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연 2회 이상) 및 평가(중간평가, 최종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지원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홍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함

IX 유의사항

- 신청자별 1개 사업과제만 지원(선정) 가능
- 공동대표일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하되 공동대표자 모두 청년이어야 함
- 서류에 기재사항 누락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3년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 참여 불가
- 임대료 지원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2차 심사 발표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계획 인원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산의 범위와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선정된 제안내용 중 사업비 사용 등 세부사항은 협의 후 변경 가능
- 지원기간 중 다른 업종으로 변경, 지원제외 업종을 추가하거나 한 사업장 소재지에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하는 경우 지원 중단할 수 있음
- 공고문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창업지원 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천군 내 지역상품 및 지역 시공업체를 우선하여 선택해야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41~42	건설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 게임용품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게임기 및 게임팩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방문 판매업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점은 가능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임대업,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정보센터 등 • 비영리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상 ‘비영리 및 단체’인 학교법인·의료법인·협회 등 - ‘민법’ 및 특별법상 종교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 등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등 - 교회 등 종교단체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불건전 업종, 무인점포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과 홍천군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본 사업취지와 무관한 업종 등

2025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선정 심사기준표

항목	세부 항목	내 용	배점
합 계			100
창업자의 역량(30)	창업자의 역량	■ 창업자의 사업수행 역량	15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15
아이템(30)	아이템의 창의성	■ 창업아이템의 창의성	15
	아이템의 현실성	■ 창업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15
사업성(30)	시장 경쟁력	■ 경쟁제품(업체)에 대한 경쟁력	10
	사업의 수익성	■ 매출의 안전성/수익성	10
	재무계획 합리성	■ 자금조달 계획의 합리성	10
사후관리(10점)	사후관리 능력	■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 계획	10
<p><가점사항> ■ 최대 10점까지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된 가공 및 서비스업(3점)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3점) ※ 단, 권리자에 한함(전용실시권 포함), 출원은 제외 - 최근 2년 이내 홍천군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과정 이수자(3점) - 최근 2년 이내 타 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과정 이수자(1점) - 최근 2년 이내 창업경진대회 입상자(1점)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최 . 주관 대회에 한함 - 여성 또는 장애인(1점) - 전통시장 내 점포 입주자(기 창업자에 한함)(1점) 			최대 10점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공고일 현재 총 관내 거주기간(1순위), 연소자(2순위) 순으로 결정

※ 창업교육과정 이수시간은 1시간당 0.5점 최대 가점까지만 인정

※ 1차(서면평가), 2차(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 동일

**『2025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항목	제출자료 목록	비 고
필수	1. 2025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서식1>
	2. 사업계획서	<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3>
	4.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 참가 서약서	<서식4>
	5.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발급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읍면사무소 민원실 - https://www.gov.kr (정부24)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기준 각 1부)	※발급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읍면사무소 민원실 - https://efamily.scourt.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7.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체납금액 없음 확인용	※발급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읍면사무소 민원실 - https://www.gov.kr (정부24)
	8. 신용정보조회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 발행	※발급방법 -한국신용정보원 통합사이트 http://www.credit4u.or.kr
	9.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사업자등록 이력 없을 때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 이력 있을 때 * 국세청 홈텍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 신고→국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발급방법 -국세청 홈텍스 -홍천세무서민원실 -읍면(어디서나민원신청)
해당시	10. 가점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11. 사업자등록증명	기창업자에 한함

[서식 1]

2025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표지의 굵은 선 안은 홍천군에서 기재, 모든사항 신청자 필수 기재

관리번호	홍천군 기재	접수번호	홍천군 기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만 세)
	전화		휴대폰	
	이메일			
	자택주소			
사업장	사업자등록 유무	<input type="checkbox"/> 예(상호: _____, 개업일: _____)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창업아이템			
	창업업종	<input type="checkbox"/> 도소매업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기타(_____)		
	창업 희망장소	▪ 1순위(주소: _____, 시장명 _____) ▪ 2순위(주소: _____, 시장명 _____)		
	업체명(예정)		업종	
	주소		지원사업 수행기간	
	임차여부		최근 5년내 유사사업 보조금 수혜 여부	받은 적 있다 : <input type="checkbox"/> 받은 적 없다 : <input type="checkbox"/>
지원신청금액	총사업비	₩ 10,000,000원(금일천만원)		
	보 조 금	₩ 7,000,000원(금칠백만원)		
	자 부 담	₩ 3,000,000원(금삼백만원)		
지원금 사용계획				
우대사항	세부내역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붙임서류와 같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홍천군수 귀하		신 청 자 : _____ (서명/인)		
<input type="checkbox"/>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3. 사업 참가 서약서 1부 4.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기준)각 1부(총 3부) 7.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9. 신용정보조회서 1부 10. 가점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11. 사업자등록증 1부(기창업자에 한함)				

『2025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신청자 :]

※ 페이지 수 제한 없음

※ 사진 또는 그림이 있을 경우 첨부

창업 아이템 개요	(한 문장 또는 2줄 이내의 핵심 내용 기재)
창업역량·경험	(창업자 특징, 강점, 경력, 창업동기 등)
창업 아이템 상세 설명 및 경쟁력	(핵심제품·서비스 및 차별성, 이미지 시안 또는 설계도 등 구체적으로 작성) (아이템의 창의성/독창성/기술성/현실성 등 사업의 경쟁력에 대해 기술)
홍보 및 판매전략	(상권 분석, 고객 분석,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등)

<p>사업성 분석</p>	<p>(예상 고객 수, 월 매출, 순이익 등 지속가능성 검토) 업계 시장규모, 수요처, 동종업계 현황 및 창업 초기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지속적인 매출 발생 가능성, 예상 고객 수, 월 매출, 순이익 등 지속가능성 등)</p>																							
<p>소요자금 및 자금조달 방안</p>	<p>(초기 필요자금 예측 및 지원금 외 자금 조달 방안 기재) ○ 자금조달</p> <table border="1" data-bbox="470 757 1390 1099"> <thead> <tr> <th>항 목(예시)</th> <th>세부내역</th> <th>금액 (천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자기자금</td> <td></td> <td></td> <td></td> </tr> <tr> <td>외부차입금 (정책자금, 부동산, 지인 등)</td> <td></td> <td></td> <td></td> </tr> <tr> <td>합계</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항 목(예시)	세부내역	금액 (천원)	비고	자기자금				외부차입금 (정책자금, 부동산, 지인 등)				합계										
항 목(예시)	세부내역	금액 (천원)	비고																					
자기자금																								
외부차입금 (정책자금, 부동산, 지인 등)																								
합계																								
<p>사업비 실행 세부 내역</p>	<p>○ 세부내역</p> <table border="1" data-bbox="470 1256 1390 1509"> <thead> <tr> <th rowspan="2">내 용 (예시)</th> <th rowspan="2">산출근거</th> <th colspan="3">예 산 액(천원)</th> </tr> <tr> <th>계</th> <th>보조(70%)</th> <th>자부담(30%)</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5,000</td> <td>3,500</td> <td>1,500</td> </tr> <tr> <td>전기공사</td> <td>전기설치비*1식</td> <td>2,000</td> <td>1,400</td> <td>600</td> </tr> <tr> <td>인테리어</td> <td>닥트공사</td> <td>3,000</td> <td>2,100</td> <td>900</td> </tr> </tbody> </table> <p>※ 사업에 필요한 견적서가 있을 경우 제출 가능 ※ 일반과세자: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공급금액의 70% 이내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총사업비(부가가치세 포함)의 70% 이내</p>	내 용 (예시)	산출근거	예 산 액(천원)			계	보조(70%)	자부담(30%)	합계		5,000	3,500	1,500	전기공사	전기설치비*1식	2,000	1,400	600	인테리어	닥트공사	3,000	2,100	900
내 용 (예시)	산출근거			예 산 액(천원)																				
		계	보조(70%)	자부담(30%)																				
합계		5,000	3,500	1,500																				
전기공사	전기설치비*1식	2,000	1,400	600																				
인테리어	닥트공사	3,000	2,100	900																				
<p>사후관리계획</p>	<p>(사업 지원 종료 후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방안과 향후 증장 기 계획 등 상세히 작성)</p>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호, 제17조제1항 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받는 자 : 홍천군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과 관련한 선정 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
- 수집·이용 및 제공받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 종료 후 5년 까지**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개인정보의 처리(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37조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할 경우 홍천군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필요 서류 미제출 사유로 탈락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유사 지원사업 중복관리 기관(정부) 및 운영기관	유사 지원사업 중복 가입여부 확인 및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사업 지원사업 관련 정보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 종료 후 5년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내역(고지사항)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관련근거
주민등록번호	유사 지원사업 중복 가입여부 확인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 종료 후 5년 까지	신용정보법 제32조~34조

2025년 월 일

정보제공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2025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 참가 서약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2025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기간 내에 창업을 이행하고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센터의 창업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는 데 동의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의 위반 적발 시 **지원 취소, 지원 중단, 지원 중지, 지원금 환수조치, 참여제한, 형사고발** 등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허위사실이나 공문서 위조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2. 3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 휴·폐업 등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 시행 지침의 사업 참여자 제재 및 환수기준에 해당될 경우
3.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할 경우 등 보조금 법령 등에 위반했을 때
4. 임대인이 참여자(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임이 확인됐을 때
5. 사업자 선정 후, 1년 이내 창업교육 10시간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
6.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었을 때
7. 기타 위법사항 적발 등

※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안부)」, 「홍천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2025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 시행 지침」, 등 관계 법령 및 사업 지침을 준용함.

2025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인)

홍천군수 귀하